알기 쉬운
호주 생활 법률 안내

호주 워홀러, 유학생, 한인 동포들을 위한

법률 상담 사례집

주시드니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ydney

KALA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알기 쉬운 호주 생활 법률 안내

2024년 12월 발행

지 은 이 | 한인법률상담서비스 (호주한인변호사협회)
발 행 처 |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주 소 | Level 10, 44 Market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연 락 처 | +61 2 9210 0200
전 자 우 편 | sydney@mofa.go.kr
홈 페 이 지 | aus-sydney.mofa.go.kr
페 이 스 북 | www.facebook.com/koreasydney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koreasydney

발간사

시드니의 뜻있는 한인 변호사들이 워홀러, 유학생, 동포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시작한 지 올해로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법적 문제 상담을 통해 호주 법률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으며, 이제는 호주동포사회의 중요한 법률 지원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2013년 첫 번째 사례집을 시작으로, 2016년 2차, 2019년 3차, 그리고 2022년 12월에 4차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신 법률 정보를 반영하고 최근 상담 사례들을 추가하여 제5차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한인법률상담서비스에서 봉사하는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님들과 법학과 대학생분들, 상담 장소 제공 등 상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법률상담사례집 발간을 후원해 주신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5차 사례집의 법률 정보를 최신화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 신영은 · 안효진 · 이채은 법학과 학생들과 서가은 · 나주엽 변호사님, 박지영 · 김다애 검사님,

그리고 법률 내용을 검수해 주신 홍경일 변호사님과 최단비 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완성된 이번 사례집이 호주에서 생활하는 우리 워홀러,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동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호주한인변호사협회

목 차

〈분야 1.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

사례 1. 벌금 (Fines) 07
사례 2. 임대차 분쟁 (Residential Tenancy Disputes) 10
사례 3. 교통사고 (Motor Vehicle Accident) 15
사례 4. 중고차 구입 시 유의사항 (Buying a second hand car) ..18
사례 5. 소비자 분쟁(Consumer Disputes) 21

〈분야 2. 형사 처벌에 관련된 법적 문제들〉

사례 6. 음주운전 (Drink Driving) 22
사례 7. 폭행 (Assault) 27
사례 8. 성폭행 (Sexual Assault) 29
사례 9.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36

〈분야 3.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

사례 10. 임금체불 (Unpaid Wages) 40
사례 11. 무급 인턴십/무급 트라이얼 (Unpaid Internship/Trial) ...45
사례 12.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47
사례 13. 직업알선 수수료 (Employment Placement Fee) 51
사례 14. 산업 재해 (Workers Compensation) 52

1.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

사례 1. 벌금 (Fines)

■ **사건 #1 개요**

- ▶ 이 모 씨는 버우드역에서 스트라스필드역까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가 적발되어 $200의 벌금을 부과받음.
- ▶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야 했으나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여 무임승차를 하게 됨.
- ▶ 이 씨는 벌금을 감면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함.

■ **조언 (Advice)**

- ▶ NSW 주정부가 발행한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5의 과태료가 부과됨.
- ▶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NSW 정부수입관리청(Revenue NSW)이 벌금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하므로, 벌금에 대한 이의 제기나 선처 요청은 벌금 납부 기한 내 이루어져야 함.
- ▶ 벌금에 대한 재고요청 (Request a review)
  - 벌금에 대한 재고요청(Request a review)은 Revenue NSW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음. (https://www.revenue.nsw.gov.au/fines-and-fees/request-a-review)
  - 재고요청시 제출한 사유가 타당한 경우벌금이 취소되거나 경고와 함께 지불 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 벌금은 그대로 유지됨.
  - 이 씨의 경우, 기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한 사실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벌금부과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상 참작을 하여 경고 조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음.

▶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 재고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Revenue NSW 홈페이지 내 'fines and fees' 메뉴의 'Difficulty paying your fine' 탭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https://www.revenue.nsw.gov.au/fines-and-fees/cant-pay-your-debt),
  월-금 7.00am ~ 7.00pm 사이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1300 138 118).

-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 Revenue NSW에서 신청자가 현재 벌금을 납부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받은 센터링크 수입내역서(Centrelink income statement), 급여명세서(payslip), 또는 계좌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를 요구할 수 있음.

-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Work and Development Order sponsor' (WDO sponsor)라는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음. 해당 기관 목록은 https://www.revenue.nsw.gov.au/fines-and-fees/cant-pay-your-debt/find-a-wdo-sponsor에서 확인 가능.

▶ Hardship Review Board에 재심 신청 (최후의 방법)

- 위 재고 요청과 분할 납부 신청이 거절되고, 벌금도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Hardship Review Board에 재심신청을 하는 것임. 재심은 NSW 주정부(NSW Government)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음(https://www.nsw.gov.au/hardship-review-board/fine-review-process). 재심 신청 시, 현재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Hardship Review Board에 최근에 받은 센터링크 수입내역서(Centrelink income statement), 급여명세서(payslip), 계좌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대출내역서 (loan statement),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credit card statement), 병원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 또는 법원 서류(court documents),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 등 생활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Hardship Review Board는 벌금 납부기간의 연장, 분할 납부 또는 면제 결정을 할 수 있음.

■ **사건 #2 개요**

- 박모 씨는 사진첩 어플리케이션을 켜놓은 채로 휴대폰을 거치대에 올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 빨간 불 신호에서 잠시 손톱을 살펴보다가 주변에서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에 의해 양손으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고 차를 옆으로 세우도록 지시를 받음.
- 박 씨는 경찰에게 고정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경찰이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바디캠) 영상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운전면허증 확인 후 어떤 설명도 없이 박 씨를 두고 떠남.
- 이로부터 몇 주 후 박 씨는 약 $500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기로 결심함.

■ **조언 (Advice)**

- 앞서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Revenue NSW에 재고 요청(Request a review) 할 수 있음. (https://www.revenue.nsw.gov.au/fines-and-fees/request-a-review)
- 벌금에 대한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계속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무죄 탄원 신청(plea of not guilty)을 할 수 있음.
- 모두에게나 적용되지는 않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하여 Legal Aid (호주의 법률구조 서비스 단체)를 통해 duty solicitor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https://www.legalaid.nsw.gov.au/)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임대차 분쟁 (Residential Tenancy Disputes)

■ **사건 #1 개요**

- 송 모 씨는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유 모 씨가 거주하는 집에서 3개월간 4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쉐어(Share)생으로 거주하였음.
- 송 씨는 그 집의 주인으로 알고 있던 탁 모 씨가 사실은 실제 소유주가 아닌데다 최근 갑자기 잠적했다는 말을 듣고 쉐어 보증금(deposit)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쉐어생을 모집했던 유 씨에게 문의함.
- 유 씨는 이에 실제 집주인인 잭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송 씨를 안심시킴.
- 계약 기간이 끝나 송 씨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한 뒤 유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유 씨는 집주인인 잭슨 씨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송 씨가 잭슨 씨에게 직접 전화했을 때 잭슨 씨는 나중에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답변함.
- 몇 주가 지나도 보증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자 송 씨는 잭슨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잭슨 씨는 태도를 바꾸어 송 씨의 보증금은 집주인 행세를 한 탁 씨가 가지고 도주하였고 자신은 송 씨의 보증금에 대해 어떠한 지불 책임도 없다고 답변함.
- 그 사이 원임차인 유 씨는 잭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은 뒤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송 씨를 포함한 4명의 공동 전전차인(쉐어생)들은 각자의 보증금 $360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임.
- 송 씨를 비롯한 전전차인(쉐어생)들은 유 씨와 구두로 쉐어 계약을 체결했고 유 씨에게 현금으로 쉐어비를 지불하여 왔기 때문에, 서면 계약서나 유 씨에게 비용을 지불해 온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임.
- 송 씨는 유 씨에게 지불한 쉐어비가 실제로 원 소유주 잭슨 씨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원 소유주 잭슨 씨의 실제 이름과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태임.
- 송 씨는 쉐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 **조언 (Advice)**

- 전대차 또는 전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임차인)은 실제 집 소유주로부터 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소유주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임의로 체결한 전대차 또는 전전대차 계약의 경우, 소유주는 전차인 또는 전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음.
- 이 사안의 경우 송 씨는 유 씨와 구두로 전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 소유주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송 씨는 집 소유주 잭슨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관련 법적 절차
  - 송 씨는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한 유 씨 또는 소유주 행세를 한 탁 씨를 상대로 NSW Civil & Administrative Tribunal (NCAT)를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음.
    - ☞ 온라인으로 신청 시 https://www.ncat.nsw.gov.au/forms-and-fees/apply-online.html
    - ☞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https://www.ncat.nsw.gov.au/case-types/housing-and-property/tenancy.html
    - ☞ 무료 통역 서비스 신청 https://www.ncat.nsw.gov.au/help-and-support/interpreters-and-translators.html
  - 또는 지방법원(Local Court)을 통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청구액 $20,000 미만일 경우 소액 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전대인이나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이름, 주소와 연락처를 꼭 알아야 함.
  - 하지만 소송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 $360을 반환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얻을 실익은 크지 않을 것임.

- 워홀러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 쉐어시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나 다른 쉐어생과 쉐어 계약을 하는 경우, 그 법적 성격은 한국법상 전대차 또는 전전대차와 유사함. 한국의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 없는 전대차 계약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대개는 소유주)에게는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전대인(임차인) 등 직접 계약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음.
- 호주에서도 집주인이나 임대인의 동의 없는 쉐어는 불법이므로 이에 관해 집주인 또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움.
- 또한 쉐어의 경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렌트비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함.
- 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때 이에 관한 영수증(payment receipt – 지불 날짜와 금액을 명시하고 전대인의 서명을 받을 것. 가능하면 전대인의 영문 이름과 주소 기재)을 받아 보관하고, 렌트비도 최소 단위(1주 또는 2주 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건 #2 개요**

- ▶ 이 모 씨는 임대를 목적으로 SNS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함.
- ▶ 집주인이라 주장하는 상대방은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어서 직접 인스펙션을 시켜줄 수 없다며 대신 집의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보여줌. 이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신분증 사본도 보내 옴.
- ▶ 이 씨가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자, 상대방은 이메일을 통해 임대신청서(application form)를 보내고 보증금(bond, 4주치 임대료에 해당)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며 본인이 직접 Rental Bonds Online에 보증금을 예치하겠다고 함.
- ▶ 이 씨가 수천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인스펙션도 하지 못하고 송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표하자, 상대방은 우선 보증금만 보내면 집 열쇠를 보내주겠다고 함.
- ▶ 이 씨가 보증금을 보내자, 상대방은 다시 말을 바꾸어 나머지 2주치의 임대료도 입금을 해야만 열쇠를 줄 것이라고 함.
- ▶ 이 씨는 빠른 처리를 위해 나머지 2주치 임대료도 입금함.
- ▶ 열쇠를 보내준다던 상대방은 여러 이유를 대며 열쇠를 보내주지 않음.
- ▶ 이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하자 상대방은 모든 연락을 피하기 시작함.

■ **조언 (Advice)**

- ▶ 상대방은 이 씨에게 집에 대해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 렌트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이 씨는 계약해지권을 가질 것으로 보임.
  - 상대방에게 먼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통지(notice to remedy breach)를 보낼 수 있음. (통상 통지 기간 7일)
  - 상대방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notice of intention to leave' 혹은 'notice to terminate tenancy agreement')를 보낼 수 있음. (통상 통지 기간 14일) https://www.nsw.gov.au/housing-and-construction/rules/minimum-notice-periods-for-ending-a-residential-tenancy
  -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보증금 반환 요청(bond refund request)을 Rental Bonds Online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 이미 지급한 보증금과 임대료 반환을 위해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나,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 만약 임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예: Rental Bonds Online에 상대방이 예치했다는 보증금이 조회되지 않는 등), Report | Cyber.gov.au 을 통해 사기 피해를 신고할 수 있음.
- ▶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직접 렌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공인된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함. 또한 직접 부동산 매물을 보지 않고 송금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3. 교통사고 (Motor Vehicle Accident)

■ **사건 #1 개요**

- ▶ 윤 모 씨는 학생 비자로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음.
- ▶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윤 씨의 과실로 지나가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함.
- ▶ 윤 씨의 차량은 대물보험(아래참고)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 윤 씨는 자신에게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문의함.

■ **조언 (Advice)**

- ▶ NSW내 모든 차량 소유주는 대인보험(CTP: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에 의무적으로 가입 할 의무가 있음.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Transport for NSW에 차량등록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윤 씨의 차량은 의무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이 보험으로 지급하게 됨.
- ▶ 대물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 누구의 과실인지 상관없이 피해 차량과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함.
  - **대물보험**(Third party property insurance): 보통 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물건에 입힌 손해만 배상함.
- ▶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윤 씨가 직접 상대 측 차량 소유주와 연락하여 처리해야 할 지, 혹은 상대 차량 보험사에 맡겨야 할 지는 상대 차량 소유주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및 그가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달려 있음.

▶ 배상의 범위

- 윤 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과실이 없는 쪽의 차량이 사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정도로 수리를 해주는 것이 통상적 변제의 범위임.
- 이에 따라 윤 씨가 책임져야 할 비용은 '수리비용' 과 '차량의 시세' 둘 중에서 더 적은 금액에 견인비용 및 기타 합당한 비용(차량 대여비용 또는 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을 더한 것으로 정함.
- 이 중 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용은 연식/제조사/모델/차량상태/지역 내 자동차 수리점 유무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당한 '최소의 금액' 으로 산정됨.

▶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의 절차

- 윤 씨가 상대 차량 운전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윤 씨는 독촉장(letter of demand)이나 소장(Statement of Claim), 또는 소환장(summons) 등을 받을 수 있음.
  2. 상대 차량 소유주나 그의 보험사가 보낸 소장/소환장에 대해 어떠한 변론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자동 판결을 받게 됨 (통상 28일 후).
  3. 판결을 통해 법원은 윤 씨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함.

▶ 윤 씨가 독촉장을 받고 합의금에 동의한다면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음:

- 요구된 합의금을 지불함. 즉시지불의 조건으로 보험사와 합의금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경제적 이유로 합의금을 한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음.
-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합의금 산정 근거를(예를 들어 정비소의 견적서)를 요청하거나 본인 지정의 다른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아 볼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합의금의 산정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법정을 통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음 (이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음).

■ **사건 #2 개요**

- ▶ 늦은 시간에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안 모씨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충돌함.
- ▶ 사고 직후 안 씨는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고 상대방 운전면허증 정보를 확보함.
- ▶ 사고 다음 날, 상대방에게 전화로 보험 접수 번호(claim number)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연락을 피함.
- ▶ 안 씨는 의무 대인보험(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에만 가입한 상태임.
- ▶ 안 씨 보험회사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음. 이에 안 씨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함.
- ▶ 이러한 상황에서 안 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함.

■ **조언 (Advice)**

- ▶ 안 씨는 상대방의 주소로 독촉장(letter of demand)을 보낼 수 있음.
- ▶ 이때,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을 바탕으로 청구할 합리적인 수리 비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4. 중고차 구입 시 유의사항 (Buying a second hand car)

■ **개인적인 경로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정식 등록된 자동차 딜러가 아닌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 구매자는 우선 Service NSW 웹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https://my.service.nsw.gov.au/MyServiceNSW/index#/rms/freeRegoCheck/details) (무료), 의무대인보험(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는지, 폐차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음 (유료) (https://my.service.nsw.gov.au/MyServiceNSW/index#/rms/vehicleHistoryReport/details).
- 추가로 Personal Properties Securities Register (통합 동산담보 등록부) (https://www.ppsr.gov.au/)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에 담보(security)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유료). PPSR 확인을 위해서는 차량의 VIN이 필요함 (1989년 이후 생산 차량인 경우).
- 만일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이 의심될 경우 Fair Trading 웹사이트에서 Vehicle Complaint Form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음. (https://regulation.nsw.gov.au/fairtrading/automotiveservices/complaint/)
- 개인적인 경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제한적이므로 구입 전에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확실하게 점검 받는 것을 추천함.

■ 중고차 판매 딜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 중고차 판매 딜러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딜러의 라이센스 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Service NSW 웹사이트에서 딜러의 이름, 사업체 이름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https://www.verify.licence.nsw.gov.au/home/Motor)
- 딜러는 다음 사항을 구매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
  - 계약 철회 기간(cooling off period)에 대한 안내
  - 환불되지 않는 보증금(deposit) 금액
  - 법으로 정한 보증(warranty)과 보장(guarantee)내용에 대한 안내
- 연식이 10년 미만이면서 주행거리 160,000km 미만인 차량을 Form 5 (Motor Dealer's Notice for Motor Vehicles)로 구매 시에는 딜러는 법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보장함 (관련 양식은 https://www.fairtrading.nsw.gov.au/help-centre/forms/motor-industry-forms 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법적 보증기간(3개월과 5,000km중 먼저 도달한 시점 기준) 내에 결함 발생시 딜러 측에서 수리해주어야 함.
  - 오토바이의 경우, 연식이 5년 미만이면서 주행거리 30,000km미만인 오토바이 구매시 3개월과 3,000km 중 먼저 도달한 시점까지 법적 보증기간임.
-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딜러는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함.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숙려기간에 대한 공지
  -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서

- 구매자는 차량에 대한 안전확인서(safety certificate)를 받아야 함
- 딜러를 통해 해당 차량 대출 및 구매계약을 한 경우, 하루의 계약 철회 기간이 적용 됨 (통상적으로 계약일 다음날 오후 5시까지임). 계약 철회 기간 내 구매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구매자가 계약 철회 기간 후 계약을 취소하면, 딜러는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 다음의 경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음.
  -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
  - 중고차 구입시 받은 안전확인서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자나 정비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 차량 구입시 딜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 중고차 딜러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5. 소비자 분쟁 (Consumer disputes)

■ **사건 개요**

- ▶ 강 모 씨는 차량의 정기 점검을 받은 후 차량의 소음과 진동이 심해짐을 느꼈고 와이퍼와 주유구 뚜껑이 등 부품이 동의 없이 교체된 사실을 발견 함.
- ▶ 이에 강 씨는 이메일로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후 담장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그러나 직원은 화를 내며 고객 비용 절감차원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했고, 와이퍼 교체는 무료로 이루어졌다고 말함.
- ▶ 강 씨는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하여 정비사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조절을 받았으나, 차량상태에는 아무런 개선이 없었음.
- ▶ 거듭 불만을 제기하자,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인슐레이터를 조정해줬으나, 여전히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었고, 다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함.
- ▶ 결국, 강 씨는 서비스센터의 정비 기술에 신뢰를 잃고,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됨.

■ **조언 (Advice)**

- ▶ 점검으로 인한 피해로 강 씨가 입은 모든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고, 아래 기관에 연락하여 분쟁 해결 시도를 해볼 수 있음:
  - Motor Traders' Association – NSW (규제 기관은 아니며, 모든 정비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것은 아님)
  - NSW 공정거래위원회 (NSW Fair Trading)
- ▶ 위 기관을 통한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NCAT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및 지역법원을 통한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다만 앞선 사례들에서 살펴본 바, 피해금액의 산정이나 입증이 어렵고, 그 금액이 적은 경우 법원 절차 진행에 대한 실익을 먼저 따져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 처벌에 관련된 법적 문제들

사례 6. 음주운전 (Drink Driving)

■ **사건 개요**

- ▶ 최 모 씨는 이제까지 한번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었음.
- ▶ 최 씨는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10분 거리에 위치한 집까지 직접 차를 운전함.
- ▶ 이 때, 이동식 무작위 음주운전단속(RBT, Random Breath Test) 대상이 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측정되었음.
- ▶ 최 씨는 지역경찰서에서 중간 수준의 음주운전(Mid-range PCA) 혐의로 기소됨.

■ **조언 (Advice)**

- ▶ 호주에서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에 해당됨.
- ▶ 위반자는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CAN: Court Attendance Notice)를 받게 되며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함.
  -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직접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을 추천함.
  -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
- ▶ 최 씨는 호흡측정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 합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임. 도로 위 RBT에서 측정을 거부했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거부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됨.
  - 샘플 채취를 위한 호흡 검사를 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로 인정되지 않음.
- ▶ 관할 법원 및 형량
  - 음주운전 관련 사안은 보통 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짐.
- ▶ 페널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짐.

▶ 전과가 없는 경우 NSW 주의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음 (2025년 2월 기준).

위반사항	최대 벌금	최대 징역 기간	자동 면허정지 기간	최대 면허정지 기간	최소 면허정지 기간	패널티 고지 벌금
NSW주 음주운전 처분에 관한 법규 – 최근 5년 내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Novice range PCA 0.00 – 0.019 (L, P자 면허 소지자에게 주로 해당)	$2,200	–	6 개월	6 개월	3 개월	$682
Special range PCA 0.02 – 0.049 (L, P자 면허 소지자에게 주로 해당)	$2,200	–	6 개월	6 개월	3 개월	$682
Low range PCA 0.05 – 0.079	$2,200	–	6 개월	6 개월	3 개월	$682
Mid range PCA 0.08 – 0.149	$2,200	9 개월	12 개월	Unlimited	6 개월	–
High range PCA 0.150이상	$3,300	18 개월	3 년	Unlimited	12 개월	–
마약중독상태의 운전 (DUI)	$3,300	18 개월	3 년	Unlimited	12 개월	–
음주측정거부 (경찰서)	$3,300	18 개월	3 년	Unlimited	12 개월	–
고의로 혈중 알코올 농도 변경	$3,300	18 개월	3 년	Unlimited	6 개월	–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높아짐. 법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위반사항	최대 벌금	최대 징역 기간	자동 면허정지 기간	최대 면허정지 기간	최소 면허정지 기간	패널티 고지 벌금
NSW주 음주운전 처분에 관한 법규 – 최근 5년 내, 2회 또는 그 이상의 중대 위반 행위						
Novice range PCA 0.00 – 0.019 (L, P자 면허 소지자에게 주로 해당)	$3,300	–	12 개월	Unlimited	6 개월	12 개월
Special range PCA 0.02 – 0.049 (L, P자 면허 소지자에게 주로 해당)	$3,300	–	12 개월	Unlimited	6 개월	12 개월
Low range PCA 0.05 – 0.079	$3,300	–	12 개월	Unlimited	6 개월	12 개월
Mid range PCA 0.08 – 0.149	$3,300	12 개월	3 년	Unlimited	12 개월	2 년
High range PCA 0.150이상	$5,500	2 년	5 년	Unlimited	2 년	4 년
마약중독상태의 운전 (DUI)	$5,500	2 년	5 년	Unlimited	2 년	4 년
음주측정거부 (경찰서)	$5,500	2 년	5 년	Unlimited	2 년	4 년
고의로 혈중 알코올 농도 변경	$5,500	2 년	5 년	Unlimited	12 개월	–

▶ 법원 출석

-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대부분의 피의자는 탄원서를 통해 감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탄원서는 일찍 제출될수록 유리함.
- 상황에 따라 일부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판결에서 관용을 기대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친구, 고용주, 직장동료 등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거나(서면 편지로 제출) 교통/범죄 관련 위반 경험이 전무한 경우

  ☞ 운전면허 박탈로 인해 극도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직업상 꼭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운전자 교육이나 위반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다가 발생한 일인 경우

  ☞ 강압이나 돌발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등)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7. 폭행 (Assault)

■ **사건 개요**

- 김 모 씨는 친구인 박 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언쟁 끝에 박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술집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됨.
- 박 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됨.
- 경찰은 김 씨를 박 씨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함.
- 박 씨는 김 씨에게 $5,000을 주면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합의해 주겠다고 제안함.
- 김 씨는 박 씨의 합의 제안에 응해야 할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문의함.

■ **조언 (Advice)**

- 호주의 형사절차에서는 한국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라는 개념이 없음.
-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님.
- 이 사안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현장에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사진 촬영과 목격자 진술 청취가 행해졌을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김 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함.
- 박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박 씨는 김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박 씨는 치료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김 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때 양측은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합의'할 수 있음. 단, 이는 형사절차와는 별개이며 형사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음.

-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법률구조공단(Legal Aid)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찰 심문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변호사는 경찰이 수집한 사실들이 사건을 과장한 것은 아닌지, 경찰이 가해자나 사건에 대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조사한 것인지를 대신 확인해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 김 씨는 경찰의 기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지(guilty plea), 무죄를 주장할 지(not guilty plea) 결정하여야 하며, 형량을 줄여 경범죄로 기소해 주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협상도 고려할 수 있음.
- 김 씨가 유죄를 인정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형량의 범위는 박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박 씨에게 상처를 입힌 폭행의 정도, 폭력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기타 양형상 참작할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김 씨에게 전과가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폭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징역보다는 집행유예나 자숙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음.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8. 성폭행 (Sexual Assault)

- **사건 개요**
  - 강 모 씨와 임 모 씨는 밤에 함께 술을 마셨음.
  - 임 씨는 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 씨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고 주장함.
  - 강 씨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함.
  - 한국에 있는 임 씨의 어머니 황 모 씨는 임 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강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을 요구함.
  - 황 씨는 성추행으로 충격을 입은 딸 임 씨를 한국으로 귀국시키기 위한 항공료 상당액(함께 귀국하려는 임 씨의 여동생 항공료까지 포함)을 강 씨에게 요구하면서, 합의금과 항공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 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함.
  - 강 씨는 임 씨의 옷을 벗기려 한 행위만으로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 씨의 고소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 지 문의하였으며, 본 건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이 점에 대한 조언도 구함.

- **조언 (Advice)**
  -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상대방의 옷을 벗기려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 (sexual touching)에 해당됨.
  -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이 사례의 경우 강 씨가 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 만약 임 씨가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면, 강 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것이며 경찰의 수사에 응해야 함.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씨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변호인은 강 씨에게 개별 신문조항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것을 조언할 것인데,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묵비권을 포기하고 본인 임의로 진술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경찰 조사가 끝나면 강 씨는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 요지와 증거의 요지를 고지 받은 뒤 유죄를 인정할 지 여부를 질문 받게 됨.
    - 강 씨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곧바로 양형 절차가 진행되고, 강 씨가 무죄 주장을 할 경우(고소인의 주장과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강 씨는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있음.
    - 강 씨의 연 수입이 법률구조공단(Legal Aid)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면, 강 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해 준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강 씨의 영어 구사 능력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음.
- 호주의 형사절차는 한국과는 달리 '형사 합의금'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고소인)측의 합의여부가 형사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임 씨의 어머니 황 씨는 한국의 예전 관례를 염두에 두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 씨는 오히려 임 씨의 어머니 황 씨를 공갈죄(extortion)로 고소할 수 있음.
    - 강 씨가 사건을 무마시킬 의도로 임 씨에게 $4,000 등을 지불할 경우 오히려 이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합의금 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 따라서, 강 씨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으며 강 씨는 임 씨가 경찰에 신고할 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신고가 행해질 경우 통상의 형사소송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수 밖에 없음.

- ▶ 한편, 강 씨에 대한 강제추행 기소사건(형사절차)과 강 씨가 아내가 제기할 이혼소송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도로 진행됨.

■ **관련 법률 정보 –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

- ▶ 성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는 강간 또는 성폭행은 물론이고 타인의 몸을 만지는 것, 신체 접촉, 키스 등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모든 성적 행위 (sexual touching) 를 포괄함.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행위 (sexual act) 를 하는 것도 성범죄에 해당함.

- ▶ 성폭행 여부의 판단

  - 성폭행: 다른 사람과 동의 없이 성교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성폭행은 다음의 상황에 성립됨.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한 경우

    ☞ '동의' 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적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 존재해야 함. 상대방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 후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비동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함.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특정적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성적 행위나 미래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예시: 콘돔을 사용하는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

☞ 다음과 같은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없음' 으로 봄:

- 상대방이 동의를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 또는 인지 기능 저하)
-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경우
- 물리적 강제력, 위협, 또는 심각한 위해의 두려움 때문에 성적 행위에 참여한 경우
- 강요, 협박 또는 공갈로 인해 성적 행위에 참여한 경우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성적 행위에 참여한 경우
- 권력, 신뢰, 또는 의존 관계의 남용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참여한 경우
- 성적 행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아 착각한 경우 (성적 행위의 본인이나 목적 (예: 의료 행위로 요인), 상대방의 신원, 상대방과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인지 여부)
- 사기에 의해 속아서 성적 행위에 참여한 경우 (단, 상대방의 수입이나 재산등에 대한 거짓말은 제외)

☞ 동의가 없는 성교 행위는 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성폭행으로 간주됨.

- 성교 행위란 한 사람의 생식기 또는 항문이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나 물체에 의해 삽입되는 경우, 또는 생식기와 입이 접촉하는 행위를 포함함 (예시: 남성의 성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입이나 항문, 여성의 질에 접촉 또는 삽입하는 행위, 또는 손가락이나 성기의 끝부분이 살짝 닿았거나 아주 짧은 시간이었더라도 성폭행에 해당함). 여성 생식기에 대한 입 또는 혀의 접촉도 성교에 포함됨. 정액 사출의 유무는 상관없음.

▶ 성폭행 신고

- 긴급 도움이 필요하거나 범죄를 신고를 위한 연락처:
  - ☞ 긴급전화 ☎ 000 또는 106 또는 지역 경찰서
  - ☞ 131 444 또는 (02) 9211 3776 (일반 문의)
  - ☞ 1800 333 000 (범죄신고 Crime Stoppers)
  - ☞ 1800 622 571 (불만사항 Complaints)
  - ☞ www.police.nsw.gov.au
    - 경찰에 연락하여 성범죄를 신고함으로써 즉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경찰은 신고 즉시 가해자를 체포하여 입건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거부될 수 있으며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보석 조건으로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음.
    - 접근금지명령(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의해 발부된 명령임. AVO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경찰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음. 상대방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도 AVO를 신청할 수 있음.
- 성폭행이 일어난 직후에 신고하는 경우
  - ☞ 가능한 빨리 경찰서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음.
  - ☞ 경찰은 피해자를 경찰서 내부에 외부접근이 차단된 방으로 안내하고 상급자가 배치되어 신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함.
  - ☞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담당 형사가 피해자를 돕게 됨.
  - ☞ 경찰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감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피해자 옆에서 도움을 줄 인력을 제공함.
  - ☞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 ☞ 성폭력전문 담당의사가 배치되어 증거를 수집함. 증거는 성폭행이 일어난 후 72시간 내에 수집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1주일 후까지도 가능함. 가해자가 기소되면 수집된 증거가 사용될 수 있음.

☞ 가능한 몸을 씻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음. 옷을 갈아입었다면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지 말고 봉투에 넣어 경찰에 제출하여야 함.

☞ 사건 발생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 경찰에 알려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받아야함. 샘플이 일찍 채취될수록 약물이나 알코올 성분이 발견될 확률이 높음.

☞ 즉시 경찰서로 간다면 여분 옷을 가져가는 것이 좋음.

☞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특정 성별(남성이나 여성)의 경찰관과 이야기 하고 싶다고 요청할 권리
- 경찰서로 갈 때 동행할 지원 인력을 요청할 권리
-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서비스를 받을 권리
-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할 권리

- 성폭행이 일어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 증거수집을 위해 의사의 진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의사의 소견이 경찰조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SAS와 연락이 될 때까지 몸을 씻거나 음식물 또는 음료 등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옷을 벗어서 세탁하지 않은 채로 종이봉투에 담아야 함. SAS는 성폭력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를 통해 경찰 조사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함(피해자의 동의 하에서만 사용). 수집된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함.

▶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NSW주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https://www.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 ☎ 1800 633 063)에 연락하면 전문가 상담, 소견서 발급, 의료서비스, 재정보조 등 폭력성 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Sexual Assault Service(SAS) 또는 NSW Sexual Violence Helpline(前 NSW Rape crisis, ☎ 1800 424 017)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지역별 SAS 목록 및 연락처는 https://www.health.nsw.gov.au/parvan/sexualassault/Pages/health-sas-services.aspx에서 확인가능
- 이 서비스들은 무료로 제공되며 절대 비밀을 보장함.

▶ 성범죄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

- 다음 서비스들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기밀성을 유지하여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도움을 주고 주로 전화와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를 남길 수 있음

  ☞ 여성 법률 서비스 NSW

  - NSW 지역여성들에게 무료로 기밀 법률 상담, 대리, 정보 제공.
  - www.wlsnsw.org.au/contact-us

  ☞ 법률 접근(LawAccess)

  - 무료 법률 정보, 상담 및 추천 서비스.
  - 1300 888 529
  - www.legalaid.nsw.gov.au/

  ☞ 커뮤니티 법률 센터(Community Legal Centres)

  - LawAccess에 전화하거나 CLC NSW 웹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커뮤니티 법률 센터를 찾아볼 수 있음. 전문 센터 및 지역 센터가 있음.
  - 1300 888 529 (LawAccess)
  - www.clcnsw.org.au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9.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 사건 개요

- 황 모 씨의 남편 노 모 씨는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황 씨를 폭행했는데, 폭행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황 씨는 이제 자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함.
- 황 씨는 자신이 집을 나오더라도 남편이 곧 자신을 찾아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함.

■ 조언 (Advice)

- 가정폭력은 Crimes (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 (NSW) 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 범죄이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피해자는 폭력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됨.
-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긴급전화 ☎ 000으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함.
- NSW주에는 가정폭력상담전화(Domestic Violence Line, ☎1800 656 463)을 비롯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여러 곳 있음. 통역 서비스 있음.
- 도움 되는 정보: https://www.facs.nsw.gov.au/domestic-violence
- 법률 지원 연락처 목록: https://dcj.nsw.gov.au/children-and-families/family-domestic-and-sexual-violence/police--legal-help-and-the-law/domestic-violence--legal-help-contacts-list.html
- 위 사례에서 황 씨는 남편 노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명령(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 신청이 가능함.
  - AVO란 피해자를 폭행(violence), 협박(threat), 괴롭힘(harassment)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찰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관련 법률 정보 – AVO**

▶ AVO에는 가족구성원 접근금지명령(ADVO: 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와 제삼자 접근금지명령(APVO: Apprehended Personal Violence Order),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가족 구성원 접근금지명령(ADVO)

☞ 전 · 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 친척, 입주 간병인 등 피해자의 가족이나 같은 집에 거주하는 타인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 위협,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

☞ ADVO 신청 시, 피해자는 법원에 퇴거 명령(Exclusion Order)을 요청할 수 있음. 퇴거 명령은 ADVO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피해자의 집에서 가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음.

☞ ADVO 퇴거 명령에 대한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할 수 있음. https://www.police.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10/507799/final-advo-korean.pdf

- 제삼자 접근금지명령(APVO)

☞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행해지는 폭력, 위협,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

☞ 피해자는 지방법원(Local Court)에 직접 AVO 신청을 하거나 가정폭력 전담경찰관(Domestic Violence Liaison Officer, DVLO)에게 AVO를 본인 대신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경찰에 AVO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폭력 행위와 우려하는 위해에 대해 경찰에 진술해야 함

☞ 경찰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스토킹 등의 범죄가 있었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AVO 신청을 해야 함

- 일반적으로, 긴급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법원으로부터 임시 AVO (Interim 혹은 Temporary AVO)가 명령이 내려지고,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AVO가 유효함. 피해자는 AVO를 다루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이 입은 피해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가 AVO 명령에 동의하면 법원은 AVO 명령을 내림.
    - 가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해자의 참석 없이 AVO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가해자가 AVO 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치안 판사의 결정을 위해 재판 날짜가 미루어질 수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반드시 임시 AVO를 신청해야 함.
-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때는 항상 경찰관 동행 하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정 출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
- AVO는 특정 조건을 통해 가해자(Offender)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데, 이 때 부과되는 조건은 대략 다음 세 가지와 같음.
    - (피해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협박, 스토킹, 위협 등을 금지.
    - (피해자가) 점유하는 장소나 근무지 주변에 들어가거나 머무르지 말 것.
    -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지 말 것
- 필요한 경우 이 외의 다른 조건들도 부과될 수 있음.
- 법원과 경찰은 법원이 명령한 AVO 및 해당 조건을 기록하여 보관함.
- 가해자가 AVO 명령, 또는 해당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간주됨
    - 만약 가해자가 AVO가 부과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는 위반행위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증거가 충분하면 가해자를 AVO 위반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
    - AVO 명령이 유효한 기간 중 AVO의 조건(들) 위반시 형사 기소가 되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5,500이하의 벌금과(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가해자의 AVO 위반 사실이 전과에 남게 됨.

-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이루어지지만, 종종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방문할 수 있음. 한국인의 정서상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호주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어 질 수 있으므로 경찰에 진술을 할 때 유의해야 함.
    - 예를 들어, "죽여 버린다" 라는 말 한마디에 협박죄가 성립되어 기소가 되고, AVO가 신청될 수 있음.

- 호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경찰이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피의자는 기소되고 AVO 신청이 될 수 있음.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

사례 10. 임금체불 (Unpaid Wages)

■ **사건 개요**

- 조 모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시드니에 체류중인 학생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Top Cleaner라는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게 됨.
- 조 씨는 쇼핑센터 등에서 1개월 간 세 번의 일요일 근무를 포함해 약 100시간 근무함.
- 조 씨는 처음 회사와 일을 시작할 때 사장인 김 모 씨로부터 시간당 $15로 계산한 임금을 매월 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개인세금번호(Tax File Number)를 사장에게 제공하지 않음.
- 일을 시작한 지 4주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조 씨는 근무시간이 표시된 시간표(time sheets)와 받기로 한 임금 액수를 제시하며 김 씨에게 임금 지불을 요청함.
- 회사는 처음 2주간 조 씨의 청소 상태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2주 분의 임금만 계산할 것이고, 그 중 1주 분의 급여는 A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한 보증금(deposit)으로 지불을 유예하겠다고 하며 결국 1주 치의 임금만 지불함.
-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끝낸 조 씨는 자신이 근무한 4주간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함.

■ **조언 (Advice)**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된 세금과 연금을 호주 국세청 (ATO: Australian Tax Office)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조 씨의 경우 고용주에게 자신의 tax file number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과 연금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였지만, 이에 상관없이 조 씨에게는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호주에서는 직업군 별로 최저 임금 수준(minimum award levels)이 정해져 있는데, 조 씨의 경우 청소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기준 "Cleaning Services Award 2020"을 적용함.
- 2025년 2월 현재 청소서비스 분야에서 비정규직인 캐주얼 직원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31.21이며(레벨1) 일요일 근무의 경우 최저 시급은 56.18임 (공휴일은 $68.67).
- 조 씨가 고용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주말과 공휴일 근무시의 특별 시급을 포함하여 법으로 정해진 최저 수준의 임금 지급
  - 고용주 부담으로 조 씨의 임금에 따른 세금과 연금을 납부
  - 미지급된 처음 2주간의 임금 지급
  - 보증금 명목으로 미지급된 1주간의 임금 지급. 보증금이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

■ **절차**

1. 일단 조 씨는 회사인 Top Cleaner에 조 씨가 고용주로부터 얻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함. 여기에는 만약 고용주인 김 씨가 14일 안에 조 씨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공정고용 옴부즈맨(FWO: Fair Work Ombudsman)에 정식으로 분쟁해결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만약 고용주가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조 씨는 FWO 홈페이지 (https://www.fairwork.gov.au/contact-us/online-enquiries)에서 온라인 문의(Online Enquiry)를 할 수 있음. 이 때, 회사의 사업명, 사업자 번호(ABN), 본인의 현 직업과 주요 직무, 고용 시작 및 종료 날짜, 급여율 등 임금 체불 관련 세부 사항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FWO 측에서 참고 서류를 요구함.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 근무시간표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면 됨.

3. 위와 같은 자료가 없을 경우, 조 씨는 공정 근로 규정 (Fair Work Regulation 2009 (Cth)) 제 3.42조(1)항에 따라 고용주에게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해당 요청을 받는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기록 사본을 조 씨가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해당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조 씨에게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함. 위반시 최대 $19,8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4. 온라인 문의 접수 후, 10 영업일 안에 FWO로부터 연락을 받게 됨.

5. FWO는 조 씨에게 다음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게 됨.
   - Fair Work Ombudsman가 고용주와 접촉하였음.
   -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조 씨와 고용주인 김 씨가 직접 출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발표할 날짜가 정해짐.

6. FWO 소속 담당자, 조 씨, 김 씨가 모두 출석한 이 회의는 양자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합의 사항은 문서화 됨. 서명이 포함된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며 한쪽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한쪽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만약 분쟁이 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조 씨는 지역법원의 소액 재판 부서(Local Court Small Claims Division) 또는 연방법원의 소액 재판 부서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Fair Work Small Claims Division))를 통해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대개 소송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함. https://www.fairwork.gov.au/workplace-problems/fixing-a-workplace-problem/resolving-disputes-with-our-help/legal-action-in-the-small-claims-court 에서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8.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법적 조치는 6년 안에 해야 함.

■ **관련 법률 정보 –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 2010년 1월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신규 근로자의 고용이 개시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48시간 이내 권장) Fair Work 정보 안내문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이 안내문에는 근로자의 권리, 최저 시급, 연 · 월차, 고용 계약서, 직장 내 근로자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정보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으면 FWO에 신고할 수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임금에 관한 기록을 7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기록보존의무는 근로자가 합당한 임금 및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임.
- 근로자는 다음의 자료와 정보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음.
  - ☞ 서명이 포함된 고용계약서 사본
  - ☞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급여일로부터 1일 내에 피고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근로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 급여 지급내역서(PAYG Payment Summary또는 Group Certificate): 매해 회계연도가 끝난 직후인 7월초에 제공
- 위의 문서들은 고용계약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 위에 기술한 문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꼭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보관하여야 함.

▶ 임금 절도 범죄

- 2025년 1월 1일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 할 경우 임금 절도 범죄 (wage theft offence)에 해당되며 형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항상 불법이었지만, 연방정부는 이번에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공정근로법을 개정함.
- 호주 연방 경찰 또는 검찰이 임금이 과소 지급된 날짜로부터 6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며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과소 지급 했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해야함.
- 고용주가 고의로 지불하지 않은 연금, 장기 휴가 지급, 유급 휴가 지급 전부 임금 절도 범죄 에 포함 됨.
- 고용주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에서 임금 절도 범죄를 인정할 경우 (2025년 2월 기준):
  - (a) 만약 법원에서 정확한 임금 체불 금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고용주는 임금 체불 금액의 3배 이상 지불해야 함
  - (b) 개인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거나 최대 $1,6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c) 회사의 경우 최대 $8,2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은 벌금이나 징역형, 또는 둘 다 선고할 수 있음.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1. 무급 인턴십/무급 트라이얼 (Unpaid Internship/Trial)

■ **개요**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교육 등은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임. 하지만 최근에 회사들이 불법으로 무급 인턴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존재함.

■ **관련 법률 정보 – 인턴십 · 트라이얼 기간**

▶ 인턴십 (Internship / Vocational Placement)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합법임.

☞ 인증받은 기관의 교육 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는 현장 실습인 경우

☞ 인턴십을 제공하는 업체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그러나 '고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는 고용주로서 인턴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고용관계로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실제 생산적 업무인지, 아니면 옆에서 관찰하는 수준인지

☞ 과정 기간이 얼마인지

☞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의 실제 유급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지

☞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에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일인지

☞ 인턴이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일정 요일이나 시간에 근무 장소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지

☞ 인턴이 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에 매출 등 수입을 창출하는 일인지, 하지만 공정근로법에 의해 무급 근로가 합법적인 경우라도, 산업 안전법이나 차별금지법 등 다른 법령 또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트라이얼 기간 (Trial Period)

- 아르바이트 혹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거치는 '트라이얼 기간'인 경우 합법적으로 무급일 수 있음.
- 이는 구직자가 일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며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 직업에서 요구하는 스킬/능력을 입증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음
  - ☞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기간만 진행함
  - ☞ 잠재적인 고용주의 감독 하에 트라이얼을 실시함
  - ☞ 만일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고용주는 해당 직업군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추가적으로 해당 구직자가 일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싶다면 고용주는 그를 비정규직(casual) 혹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할 수 있음.

▶ 해당 업체와 고용 관계에 있었던 경우 / 무급 인턴십이 불법이었던 경우

- 만일 업체와 고용 관계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 체불의 경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확한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이를 우선 고용주에게 알린 후, 고용주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정고용 옴부즈맨(FWO: Fair Work Ombudsman)에 건의할 수 있음. 온라인 문의는 FWO 홈페이지(https://www.fairwork.gov.au/contact-us/online-enquiries)에서 할 수 있음. (절차 관련 상세한 내용은 "임금 체불 – 절차(Procedure)" 부분 참조)
- 당사자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대개 FWO는 Assisted Voluntary Resolution이라는 자발적인 중재 제도를 제공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 혹은 그 일부분을 받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fairwork.gov.au/sites/default/files/migration/711/effective-dispute-resolution-best-practice-guide.pdf
- 참고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6년 안에 해야 함.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2.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

■ **개요**

-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도 가능하나 추후 분쟁이 있을 경우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음. 실제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내에 일반적으로 기술되는 사항들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및 권한을 확인해야 함.
-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호주에서의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국가고용핵심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NES) 이 적용됨. 이 규정에 존재하는 11가지 항목들은 근로자가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법에 의해 보장됨. 고용계약을 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법률 정보**

▶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직책
- 고용 형태(풀타임/파트타임/캐주얼)
- 채용 시작일
- 근무 시간(근무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주당 총 근무 시간)
- 시간당(또는 주당) 임금
- 시간 외 수당
- 휴가(유급, 무급)
- 고용 계약 해지 방법(notice 등)
- 성명 및 서명

▶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NES)

1. **주간 최대근로시간:** 주당 38시간으로, 합당한 추가 근무시간이 더해짐.
2. **유연근로제 요청:** 공정근로법 제65조(1)항(A)호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임산부, 간병인, 장애인, 가정 폭력 피해자, 55세 이상의 직원) 근무시간과 장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3.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제안과 요청:** 동일한 고용주와 6 개월 이상 근무 또는 소규모 사업체 고용주(직원수가 15명 미만)와 12개월 이상 근무한 캐주얼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정규직 전환 요청할 수 있음.
4. **육아휴직(parental leave):** 근로자 개인마다 12개월까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의 휴가 연장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5. **연차휴가(annual leave):** 매년 4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일부 교대 근무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1주의 휴가가 더 주어짐.
6. **개인/간병휴가(personal/carer' s leave), 특별휴가(compassionate leave), 가정폭력휴가(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매년 10일(풀타임 기준)의 유급 개인/간병 휴가(보통 병가라고도 함)가 주어지며, 2일의 무급 간병 휴가와 가족의 사망 및 질병에 따른 2일의 특별 유급 휴가(캐주얼은 무급)를 받을 수 있음.

7. **지역활동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재난이나 긴급 사태에 따른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나 배심원 의무 수행을 위한 휴가. 배심원 의무 수행을 위한 휴가일 경우 첫 10일 동안 보충 급여 (근로자의 10일 동안 기본 급여와 배심원 의무 급여의 차액)를 받을 수 있으며 배심원 의무 수행을 제외한 지역활동휴가일 경우 무급 휴가임.

8.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동일한 고용주와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9. **공휴일:** 합리적인 근무 요청이 없는 이상, 공휴일에는 유급휴가가 주어짐.

10. **연금 기여 (superannuation contribution):**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의 11.5% (2025년 7월 1일부터 12%)의 연금을 지불해야 함.

11. **해고 통보(notice of termination) 및 정리해고 수당(redundancy pay):** 고용종료시 최소통보기간은 근무기간과 직원의 나이를 고려하여 결정. 정리해고 수당 또한 근무기관을 고려하여 결정.

해고 통보 기간

근로자의 근무기간	해고 통보 기간
1 년 미만	1 주
1 년 이상 ~ 3 년 미만	2 주
3 년 이상 ~ 5 년 미만	3 주
5 년 이상	4 주

직원이 45세 이상이고 해고 통보를 받은날 기준으로 고용주와 함께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 통보 기간이 1주일 연장됨.

정리해고 수당

근로자의 근무기간	정리해고 수당
1 년 이상 ~ 2 년 미만	4 주간의 정리해고수당
2 년 이상 ~ 3 년 미만	6 주간의 정리해고수당
3 년 이상 ~ 4 년 미만	7 주간의 정리해고수당
4 년 이상 ~ 5 년 미만	8 주간의 정리해고수당
5 년 이상 ~ 6 년 미만	10 주간의 정리해고수당
6 년 이상 ~ 7 년 미만	11 주간의 정리해고수당
7 년 이상 ~ 8 년 미만	13 주간의 정리해고수당
8 년 이상 ~ 9 년 미만	14 주간의 정리해고수당
9 년 이상 ~ 10 년 미만	16 주간의 정리해고수당
10 년 이상	12 주간의 정리해고수당

12. **Fair Work 정보 안내문(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모든 신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 캐주얼 직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고용기준 항목들

- 국가고용기준은 기본적으로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캐주얼 직원의 경우 다음의 일부 권리만 보장됨.
  1. 주간 최대근무시간 – 주당 38시간 미만
  2. 2일의 무급 간병휴가와 필요시 2일의 가족의 사망 및 질병에 따른 무급휴가
  3. 지역활동 무급 휴가
  4. Casual Employment 정보 안내문 (Casual Employment Information Statement) 제공

- 12개월 이상 정기적인 스케쥴로 근무하였던 캐주얼 직원의 경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이 예상된다면 **유연근로제 요청**과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음.

▶ 만일 국가고용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고용주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논의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정고용 옴부즈맨(FWO: Fair Work Ombudsman)에 건의할 수 있음. 온라인 문의는 FWO 홈페이지(https://www.fairwork.gov.au/contact-us/online-enquiries)에서 할 수 있음.
- 상세한 절차에 관해서는 "임금 체불 – 절차(Procedure)" 부분 참고.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3. 직업알선 수수료 (Employment Placement Fee)

■ **관련 법률 정보**

▶ NSW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중개 업체들은 Fair Trading Act 1987(NSW)와 Australian Consumer Law를 준수해야 함.

-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위반시 최대 $5,500의 벌금형에 처함.
- 위반시 근로자는 관할 법원에서 고용중개 업체에게 지불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 직업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당하거나 지불한 경우가 있으면 NSW 공정거래위원회(NSW Fair Trading)에 신고할 수 있음.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4. 산업 재해 (Workers Compensation)

■ **사건 개요**

- 김 모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5개월 전 퀸즐랜드의 한 바나나 농장에서 바나나를 수확하던 중, 칼로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음.
- 김 씨는 병원에 이틀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입원비와 2일간의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WorkCover Queensland 에서 선지급을 받음.
- 김 씨는 비록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관해서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자신이 근무 도중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고용주인 농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문의함.

■ **조언 (Advice)**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퀸즈랜드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법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Qld)) 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음.
- Queensland주 내의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법은 정부기관인 WorkCover Qld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산재발생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김 씨는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이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함.
  2. 김 씨는 부상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사에게 부상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서술하는 노동능력증명서 (Work Capacity Certificate)작성을 요청해야 하며 고용주와 WorkCover Qld 에게 보내야함.
  3. 가능하다면 이때 사고 경위 및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산재보상 신청양식'** (WorkCover Claim Form)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https://www.worksafe.qld.gov.au/claims-and-insurance/compensation-claims/make-a-claim

4. 김 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재보상 신청양식 (WorkCover Claim Form)을 노동능력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게 (WorkCover Qld) 보내야함.

5. 보험사는 김 씨의 고용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김 씨 또는 고용주를 통해 위와 같은 서류를 접수받은 후 20 영업일 이내에 김 씨의 산재보상 클레임 (WorkCover statutory claim)을 받아 들이거나 거부해야함.

6. 만약 김 씨의 산재보상 클레임 (WorkCover statutory claim)이 수락될 경우 김 씨는 보험사가 마련한 재활치료에 참여해야 하며 고용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김 씨는 보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김:

   ☞ 사고 및 부상으로 인해 김 씨의 노동능력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 휴업급여(weekly payments for loss of wages)를 지급

   ☞ 사고 및 부상과 관련된 합리적인 치료비용

   ☞ 병원 갈때 들어가는 교통비용

   ☞ 영구적 손상에 대한 일시금 보상 (lump sum compensation for permanent impairment).

7. **임시적 휴업급여:** 김 씨의 노동능력이 신속히 회복되지 않을 시에 보험사는 바로 '재해여부 및 근로재개 판정' 을 내리지 않고 휴업급여를 제공하게 됨. 따라서 판정 전까지 보험사는 김 씨가 이전에 지급받던 평균적인 임금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휴업급여를 보상함

분기	기간	최대 휴업급여 기준
1분기	사고 발생 후 첫 26 주	1. 김 씨 임금의 85% 2. industrial award 가 적용될 시 industrial award 에 명시된 최저 임금 3. industrial award 가 적용되지 않을 시 평균 임금 (Queensland full-time adult's Ordinary Time Earnings)의 80%)
2분기	사고 발생 후 27 주 ~ 104 주	1. 김 씨 임금의 75% 2. 평균 임금 (Queensland full-time adult's Ordinary Time Earnings)의 70%)

분기	기간	최대 휴업급여 기준
3분기	사고 발생 후 105 주 ~ 260 주	**김 씨의 부상이 영구적 손실 15% 이상일 경우:** 1. 김 씨 임금의 75% 2. 평균 임금 (Queensland full-time adult' s Ordinary Time Earnings)의 70%)

8. 보험사는 김 씨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동능력평가' (Work Capacity Certificate)를 진행하며 '부상 회복 및 근로 복귀 프로그램' (accredited rehabilitation and return to work program)을 제공함. 이는 김 씨의 근로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임.

   ☞ 따라서 김 씨는 지속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회복 기간 동안 보험사에서 준비하는 부상회복 계획 및 보험사 지정 의사의 진단 및 진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어길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중단됨.

   ☞ 보험사는 김 씨의 부상을 고려하여 WorkCover Table of Costs 에 따른 합리적인 재활치료 비용을 지불해야함. WorkCover Table of Costs는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https://www.worksafe.qld.gov.au/service-providers/fees

   ☞ 만약 보험사 측에서 김 씨의 근로현장 복귀 및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무를 재개해야 함.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9. 만약 보험사 측에서 사고로 인한 김 씨의 부상이 '영구장애' (permanent impairment) 수준으로 업무 복귀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었다고 판정할 경우 보험사는 김 씨의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상해 정도에 따른 일회성 보상 (lump sum compensation for permanent impairment)을 지급해야 함.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상해 정도에 따른 일회성 보상 다음과 같이 계산됨:

   ☞ (영구상해감정 %) x (퀸즈랜드 산업재해 법에 따른 최대 보상 (2025 년 2월 기준 $307,385)). 영구상해감정이 10%일 경우 일회성 보상은 $30,738.50 으로 계산됨.

10. 만약 김 씨가:

    (a) 15% 이상의 영구상해감정을 받으며 부상으로 인해 일상 / 기본 활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는 추가적인 일회성 보상금액 (additional lump sum compensation)을 지불해야 함.

    (b) 30% 이상의 영구상해감정을 판정받을 시 퀸즈랜드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법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Regulation 2014 (Qld)) Schedule 3 에 의거해서 보험사는 추가적인 일회성 보상금액 (additional lump sum compensation)을 지불해야 함.

11.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오는 일회성 보상은 보험사가 영구상해 평가 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낼때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통지서는 부상이 어느정도 안정□다고 판정될 때 제공됨. 만약 고용주 과실로 인해 영구상해를 입었다면 김 씨는 손해배상청구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를 제기할 수 있지만 김 씨가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오는 일회성 보상을 받는다면 손해배상청구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보험사가 영구상해 평가 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낼때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고 결정 해야 함.

12. 손해배상청구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하며 만약:

    (a) 3년 제한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보험사가 부상 평가 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내는 경우 보험사가 통지서를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b) 3년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김 씨가 보험사에 영구 장애 평가를 요청했지만 평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가 통지서를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또는 김 씨가 영구 장애 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의료평가심판원 (Medical Assessment Tribunal)의 추가적인 평가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13. 만약 김 씨가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을 진행한다면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자료 (재해 시점의 목격자의 진술서 포함)를 확보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때 유리함.

14.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음:
    (a) 신체적 정신적 상해로 인한 손실 (general damages / pain and suffering)
    (b) 경제적 손실 (past and future economic loss)
    (c) 의료 및 재활 비용 (past and future special damage)
    (d) 경제적 손실에 따르는 연금 손실 (loss of past and future superannuation)
    (e) 가사 도우미 비용 (past and future paid services)

15.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은 대부분 불승소 무수임 (no win no fee)의 형태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함.

▶ 추가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신청에 관해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클레임 (WorkCover statutory claim)은 원칙적으로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은 사고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함.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을 진행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함.
- 고용주가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음.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기타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문의는 Work Safe Queensland (☎1300 362 128)에 문의할 수 있음. 이외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자세한 절차 및 가이드는 아래의 Work Safe Queensland 제공 문서에서 찾을 수 있음. https://www.worksafe.qld.gov.au/resources/guides/if-an-injury-or-illness-occurs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 주시드니총영사관과 호주한인변호사회는 호주에 생활하면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워홀러, 유학생, 동포들을 위하여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내 용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워홀러, 유학생,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 상담 (One-Off Advice)

일 시

매달 첫째 주 화요일 18:15 ~ 21:15 (사전 예약 필수)
(※ 1월은 둘째 주 화요일)

장 소

주시드니총영사관 민원실 – Level 10, 44 Market St, Sydney
(※ 원격지역 거주자는 전화 상담 가능)

상 담 분 야

▲ 신용불량 및 채무관계 (Credit & Debt)
▲ 벌금 (Fines)
▲ 경미한 형사사건 (Minor Criminal Matters)
▲ 고용 (Employment)
▲ 자동차 사고 (Motor Vehicle Accidents)
▲ 차별 (Discrimination)
▲ 소비자 불만 (Consumer Complaints)
▲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가정법 문제 (Family Law involving Children)
▲ 범죄 피해자 보상 (Victim’s Compensation)

※ 법률상담서비스는 상기 분야로 한정되며, 이민 · 이혼 · 비즈니스 운영 · 부동산 매매 · 한국법 관련 사안 등의 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절 차

법률 상담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 급한 사안인 경우, 변호사 선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의 신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상담 기회를 드립니다.

1단계. 상담신청

☞ 연락처(Mobile 등)와 상담 희망 내용을 이메일(koreanlegalservice@gmail.com)로 보내거나 음성사서함(전화: 02 8078 4608)에 남겨주세요.
(※상담 신청은 연중 접수 중)

2단계. 상담 시간 안내

☞ 상담 신청일의 다음 주 월요일 오후12시 ~ 오후 2시 사이에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예약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3단계. 법률 상담

☞ 신청자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지정된 상담 시간에 상담을 실시합니다. (※ 전화 상담 신청자는 지정된 상담 시간에 전화로 상담)

문 의

이메일 : koreanlegalservice@gmail.com

MEMO

MEMO

알기 쉬운 호주 생활 법률 안내

"호주 워홀러, 유학생, 한인 동포들을 위한
법률 상담 사례집"